

대구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의견표명 및 제도개선 의견표명

□ 민원 제목 : 공작물축조신고필증 발급(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 허용) 요구

□ 신청 취지

- 신청인은 약 20년 전 대구 북구 00동0가 000-00 소재 건축물(이하 ‘이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의 사용승인 시 옥외에 설치된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치¹⁾(3단 수직순환식주차장치)를 철거한 후 새로운 기계식주차장치²⁾(수직순환식주차장치)를 설치하고자 2021. 00. 00. 대구 북구 건축주택과장(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에게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 피신청인 1은 대구 북구 교통과장(이하 ‘피신청인 2’라 한다)이 신설하여 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의3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을 재검토하도록 신청인에게 2021. 00. 00. 보완 통지함.
- 이는 부당하니 이를 철회한 후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함.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피신청인 1(건축주택과장)
 - 피신청인 2가 2020. 6. 1. 신설하여 운영 중인 조례 제19조의3에 따르면, “규칙 16조의2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는 총 주차대수의 5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최소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6대(기계식주차 10대, 옥외 자주식주차 6대)

1)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

2) 턴테이블(turntable: 방향전환장치)이 내장된 높이 7.82m의 외벽이 없는 강파이프조의 기계식주차장치

인 이 민원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는 조례 제19조의3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 1이 2021. 00. 00. 신청인에게 보완 통지한 처분을 철회하고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없다.

○ 피신청인 2(교통과장)

- 피신청인 2가 2020. 6. 1. 신설하여 운영 중인 조례 제19조의3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관련 별표 1 비고 제1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외의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종전에 설치된 총 주차대수 또는 그 이상의 주차대수 확보를 위해 새로이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도 이를 허용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실관계

- 대구 북구청장으로부터 2001. 0. 0. 지하0층/지상0층 연면적 3,214.52㎡(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노유자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2002. 0. 0)을 받은 이 민원 건축물의 남측 공지에는 이 민원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15조 제1항 관련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 16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부설주차장의 형태는 옥외 자주식주차장 6대(면), 기계식주차장 10대가 설치되어 있다.
- 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의 사용승인 당시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치(수직순환식주차장치)가 노후화되어 수시 작동이 중지되는 등의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그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동일 기종(제품)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승용차의 대형화로 종전 설치된 제품이 생산되지 아니함에 따라 신청인은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달리하되, 총 주차대수의 규모가 동일(교체 전: 기계식주차: 10대 옥외 자주식주차: 6대, 교체 후: 기계식주차: 14대 자주식주차: 2대)한 기계식주차장치로 이를 교체 설치하기 위해 0000. 00. 0. 전기설비공사업체와 일금 0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00,000,000원을 지불하였고, 이어 0000. 00. 0.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업체

와 일금 000,000,000원으로 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납품) 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 00,000,000원을 지불한 신청인은 2021. 00. 00. 피신청인 1에게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신청인으로부터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피신청인 1은 2021. 00. 00. “조례 제19조의3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을 2021. 00. 00.까지 재검토할 것”의 내용으로 보완 통지를 하였다.

□ 관계 법령 등

- 「건축법」 제8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 「주차장법」 제19조의5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 및 조례 제19조의3

□ 판단 및 결론

-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발급(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를 허용)하여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 피신청인 1은 2021. 00. 00. 보완 통지한 처분을 철회(취소) 하고 신청인에게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 ① 피신청인 2가 조례 제19조의3의 개정(신설)을 위한 입법예고(2020. 4. 24.~2020. 4. 29.) 시 피신청인 1이 건축허가 등에 따른 제반 운영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통지는 그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 1이 2021. 00. 00. 신청인에게 보완 통지한 내용의 의미를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③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이 기계식주차장치의 교체 설치를 위해 해당 업체에 지급한 계약금 00,000,000원을 반환받을 수 없음에 따라 신청인의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점 ④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치를 계속하여 작동할 경우 이 민원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파손은 물론 운전자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통지한 처분을 철회(취소)하고, 신청인에게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 1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조례 제19조의3에 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에 관하여

- 피신청인 2가 2020. 6. 1. 신설하여 운영 중인 조례 제19조의3을 검토한 결과, ① 조례 제19조의3을 신설할 당시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의 고장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이를 교체 설치할 경우에는 기계식주차대수를 달리하더라도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의 규모가 동일할 경우 위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또는 별도의 조항)를 두거나 부칙에 경과 조치(적용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이러한 근거를 두지 않아 고장난 기계식주차장치의 교체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② 도심지의 심각한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 종전에 설치된 주차대수 이상으로 기계식주차장치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 ①과 같은 사유로 교체 설치가 불가능한 점, ③ 시 조례 제15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판매·업무시설 등) 등에 해당하는 중·대형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경우 자주식주차장을 최소 50% 이상 확보하기 어려워 중·대형 건축물의 건축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무분별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 제19조의3을 신설한 취지와 달리 위 ① 내지 ③과 같이 주민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도심지 주차난의 가중은 물론 고장이 잦은 기계식주차장치의 계속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의 발생 및 고장 난 기계식주차장치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피신청인 2는 조례 제19조의3을 2022. 4. 30. 이전 합리적인 내용으로 제도개선(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피신청인 1 및 2가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을 수용하여 신청인의 고충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됨.

대구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시정권고)

□ 민원 제목 :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요구

□ 신청 취지

- 신청인은 2022. 12. 00.(수), 00:00경 신청인의 노모가 거주하는 대구 북구 00동 000-0의 주택을 방문하기 위하여 000-00의 주택이 소재한 00동 0m×0m의 도로가 교차하는 도로의 모퉁이(이하 ‘이 민원 도로의 모퉁이’라 한다) 부근에 00저0000 차량(이하 ‘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을 일시 주차한 바 있음
- 신청인이 이 민원 차량을 주차한 위치는 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하는 규제 표지 또는 노면에 황색실선이 아닌 황색점선이 표시된 장소(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황색점선이 보이지 않는 장소)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교차로의 모퉁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대구 북구 교통과장(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이 민원 차량의 불법 주·정차한 사실이 안전신문고로 신고(2022. 00. 00.)되었다는 이유로 이 민원 차량의 소유자에게 2023. 0. 00.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위반으로 00,000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함.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이 민원 차량은 2022. 00. 00. 00:00에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하는 이 민원 도로의 모퉁이에 불법 주정차한 사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됨에 따라 피신청인은 2023. 0. 00. 「도로교통법」 제32조 위반으로 이 민원 차량의 소유자에게 적법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한 것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사실관계

- 피신청인은 안전한 교통질서 문화 정착을 위해 2019년부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1분 간격으로 찍은 2장의 사진을 첨부하여 불법 주·정차한 사실(행위)을 신고 요건에 부합되게 주민이 신고할 경우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현장 조사) 없이 첨부된 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안전신문고 제도를 24시간 운영 중에 있고, 이 민원 차량은 2022. 12. 00.(수), 00:00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정차·주차금지표시(516)된 이 민원 도로의 모퉁이에 약 20분간 불법 주·정차한 사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되었다.
- 이에 피신청인은 2022. 00. 00.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이 민원 차량의 소유자에게 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23. 0. 0.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이 민원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다.
- 이 민원 차량의 소유자는 피신청인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정한 의견 제출의 기한(2023. 0. 0.)보다 22일 경과한 2023. 0. 00. 신청인이 이 민원 차량의 운전자인 사실을 포함한 위 ‘1’의 신청 취지와 같은 내용의 의견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그 의견을 제출받은 피신청인은 2023. 0. 00.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조서’를 작성하여 교통과의 관련 공무원들이 심의한 결과 그 제출된 의견을 부결로 처리한 바 있다.
- 이후 피신청인은 2023. 0. 0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이 민원 차량의 소유자에게 「도로교통법」 제32조 위반으로 00,000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고, 과태료 부과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이 민원 차량의 운전자인 신청인은 2023. 0. 00. 피신청인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이의제기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23. 0. 0.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이를 통보(송부) 하였다.

□ 관계 법령 등

-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같은 법 제160조 제3항·4항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 12-0035)
 -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시장등이 주·정차 위반행위를 이유로 같은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고용주 등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고용주 등과 동일인으로 밝혀진 경우 시장등은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고, 관할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

□ 판단 및 결론

- 피신청인은 이 민원 차량의 소유자에게 적법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를 취소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① 피신청인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시 이 민원 차량의 소유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결과, 주·정차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2023. 0. 00. 신청인으로 밝혀져 법제처의 법령해석(안건번호 12-0035)에 따라 이 민원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는 점, ② 이 민원 차량의 소유자가 2023. 0. 00.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의견은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피신청인은 2023. 0. 00.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 조서를 작성한 후 심의 결과 부결로 처리한 모순이 인정되는 점, ③ 피신청인은 2023. 0. 00.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 신청인이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이의제기를 하였을 경우 이 민원 차량의 소유자가 이의제기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반송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피신청인은 2023. 0. 0. 신청인의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이를 송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경우 피신청인은 2023. 0. 00. 이 민원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피신청인이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을 수용하여 신청인의 고충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됨